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24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 박상혁 · 김병기 · 박희승

노종면 · 김현정 · 김한규

조승래 • 민병덕 • 이연희

박홍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,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수 없음.

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「상법」 제732조를 근거로 '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'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.

이에 학교,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 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32조).

법률 제 호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경우에는"을 "경우와 학교·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"으로한다.

제732조(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732條(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	제732조(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
約의 禁止) 15歲未滿者, 心神喪	<u>약의 금지)</u>
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	
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	
無效로 한다. 다만, 심신박약자	
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	
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	
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	
있는 <u>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	<u>경우와 학교·청소년 단</u>
하다.	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
	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
	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
	기 위하여 15세미만자의 사망
	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
	체결하는 경우에는